(별지 제21호 서식)

처리기간 : 즉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

신청인	상 호		대 표 자	
	본사 주소		전화번호	
	사업자등록번호		통관고유번호	
	법인등록번호		사업자등록수	

요건 변경사항	담보제공 생략자	「관세법」[] 「환급특례법」[] 위반	관세 등 조세[] 과태료·과징금[] 체납
		청산·파산·회생절차 개시[]부도발생[]	신용평가등급 기준미달[]
		불성실신고인 지정[]	관세채권확보 곤란[]
		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[]	최근2년 연5억원 이상 수출[] 최근2년 연5억원 이상 수입[]

	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요건 외 변경사항	관할지 세관		
	사업자등록수		
	기 타		

「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고 인 (서명 또는 인)

세 관 장 귀 하

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세 관 장 직인

귀 하

첨부서류
1. 위임장(위임의 경우에 한함)
2.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필요한 경우에 한하며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)
3.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및 제38조,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